

■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, 계약기간, 계약해제, 신원 인수인의 권리·의무,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1. **계약목적** : 오산요양원1호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
2. 계약기간

-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3. 계약해제

- ①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.
 - 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 - 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-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2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3)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5)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2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3)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4)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6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① 본인부담금 :

- ㉠ 1등급 ~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%를 부담한다.
- ㉡ 1등급 ~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0%를 부담한다.
- ㉢ 1등급 ~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.

【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】

(2022.01.01.기준)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수가	65,750	61,010	56,240		
본인부담	13,150	12,202	11,248		
본인부담금 내역 (30일기준)	기초수급자		0% 부담		
	차상위계층		8% 또는 12% 부담		
	일반수급자		20% 부담		

【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】

(2022.01.01.기준)

요양 등급	기준일	급여항목		
		급여총액 (원)	공단부담금(88%/원)	본인부담금(12%/원)
1등급	30일	1,972,500	1,735,800	236,700
2등급	30일	1,830,300	1,610,664	219,636
3,4,5 등급	30일	1,687,200	1,464,736	202,464

요양 등급	기준일	급여항목		
		급여총액 (원)	공단부담금(80%/원)	본인부담금(20%/원)
1등급	30일	1,972,500	1,578,000	394,500
2등급	30일	1,830,300	1,464,240	366,060
3,4,5 등급	30일	1,687,200	1,349,760	337,440

요양 등급	기준일	급여항목		
		급여총액 (원)	공단부담금(92%/원)	본인부담금(8%/원)
1등급	30일	1,972,500	1,814,700	157,800
2등급	30일	1,830,300	1,683,876	146,424
3,4,5 등급	30일	1,687,200	1,552,224	134,976

【시설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】

(2022.01.01.기준)

비 급 여 현 황	비급여항목	금액(원)	내용	산출근거	비고	등록일
	식재료비	315,000	3,500원×3회×30일	1식 3,500원	30일기준	
	간식비	30,000	1,000원×1회×30일	1식 1,000원	30일기준	
	상급침실					
	이·미용비					